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28
----------	-----

제출년월 : 2023년 5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 교육의 권리 보장을 위한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8, 거산프라자(3,4층)
- 규 모 : 596.18㎡(사무실, 교육실, 운동실, 심리안정실 등)
- 인 력 : 13명 (센터장 1명, 특수교사·심리운동사 등 12명)

나.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

다. 위탁방법 : 재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라. 위탁사무의 범위 :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및 사무 전반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중증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 전문치료 및 문화여가수업을 통한 개별적 기능향상 지원
-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 시설관리 등

3. 관계법령 등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